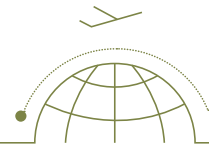


01. 동반성장 모델

- FTA 적극 활용하니, 동반성장 따라 오네~
-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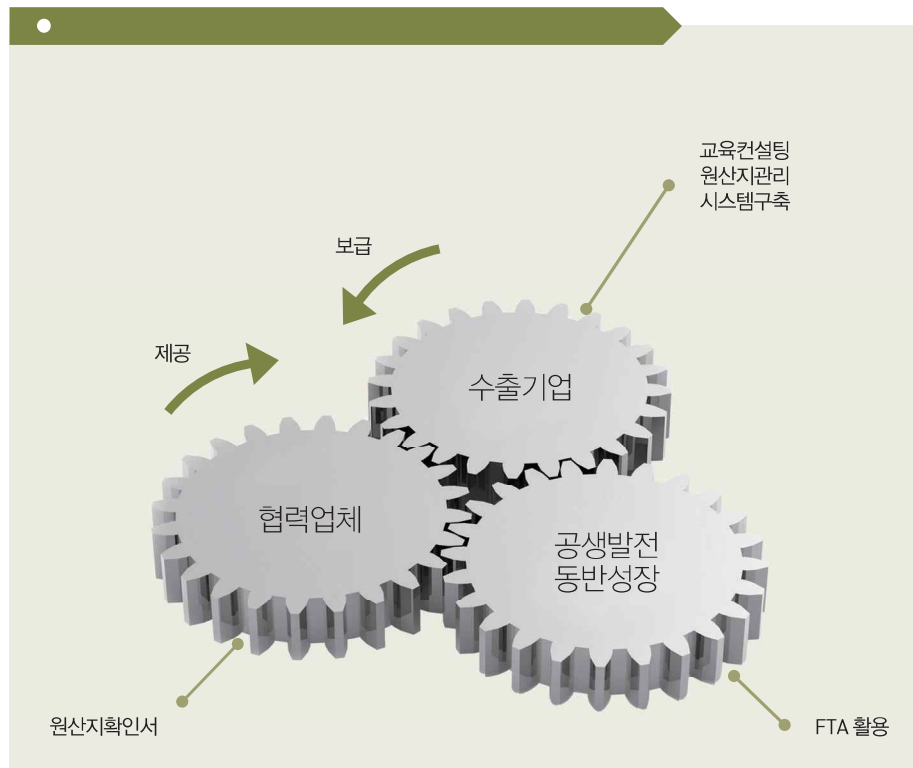
개요

- 수출기업(대기업)의 FTA 특혜 활용을 위해서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중소기업)의 협조*가 필수적,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방안을 제시하는 모델

* 공급(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제공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수출기업(대기업)의 원부자재 공급업체(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제공 등 FTA 활용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FTA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대·중소기업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반성장을 견인



활용효과

- FTA 활용효과 거양을 통한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공생발전 가능
- FTA 활용능력 개선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가능성 증대
- 국내 거래단계에서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사후검증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위험 예방 가능

FTA 적극 활용하니, 동반성장 따라 오네~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L사는 공작기계 완성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미국, 유럽 지역으로 2013년 약 3,870대를 판매하여 4,730억 원의 매출(미국 약 1,860대 2,050억 원, 유럽 약 2,010대 2,68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중심기업
- 제품소개 : 공작기계(HS Code : 8457.10, 8458.11 등)

② FTA 활용 전 상황

- FTA 발효 전 A사는 EU 수출 시 2.7%, 미국 수출 시 4.2%의 관세를 지불하여 가격 경쟁력 저하
 - 대당 평균 1억 원을 상회하는 제품가격으로 공작기계 1대당 EU는 약 270만 원, 미국은 약 420만 원의 관세가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 A사에게 있어 FTA 혜택은 원가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무기

③ 장애요소

- A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원산지관리 부담
 - 원산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400여 개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 받다보니 협력사 입장에서 사후검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발생하여 업무진행에 차질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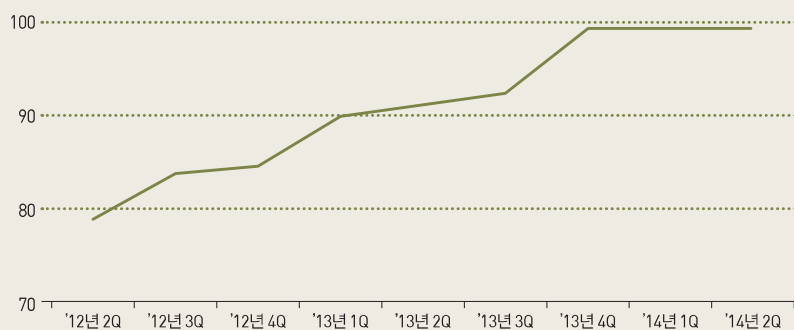
④ 극복방법

- 실무자의 원산지관리 능력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내 원산지관리 전담인력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4명)
- 4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경영진 및 담당자에 FTA에 대한 홍보를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합교육(년 8~10회 실시, 누적 35회)을 실시하고 240여 개 주요 협력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지도 실시

⑤ 활용효과

- 원산지 비율이 낮아 한국산 판정을 받기 어려운 기종의 주요 수입산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협력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
 - 주요부품 중 대만산 ATC(자동공구교환장치)는 2013년 국산화에 성공하여 협력사 D사의 경우 현재까지 17.4억 원의 매출 달성
 - 또한 중국산이던 주물품을 국내산으로 전환한 후 현재 6개 협력사에서 23.8억 원의 매출 발생
- 발효초 80% 이하이던 FTA 협정 적용 물품 수가 99% 수준으로 향상

● A사 수출제품 한-미 FTA 적용 비율



⑥ 시사점

- FTA 활용을 위한 협력사 지원을 통해 FTA 활용 성공과 동시에 부품 국산화 개발에 참여한 협력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① 개요

- 한계점에 도달한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노력보다는 절감 폭이 상대적으로 큰 FTA 특혜세율의 수혜효과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창출 등 기업 외형성장 유도 모델

②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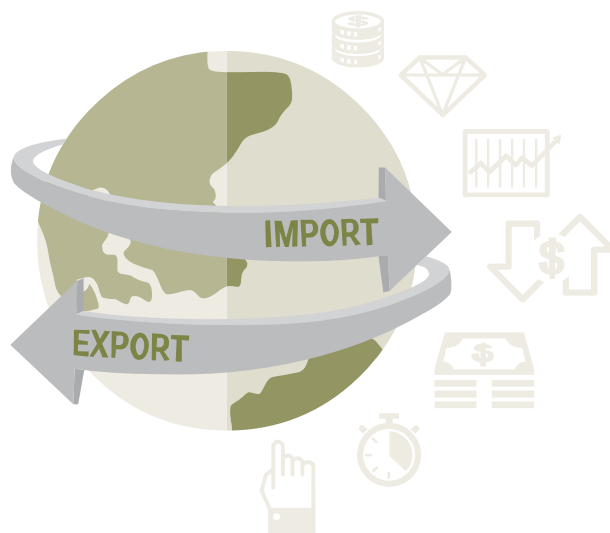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절감이 어려운 재료비 등의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경영체제 전환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량 증대 → 생산시설 확충 →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 고용 및 생산시설 확대로 일자리 창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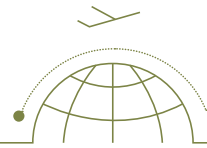
③ 활용효과

-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해외시장 선점은 곧 주문량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생산라인 증설과 직원고용이라는 선순환효과 거양
- 원청기업의 주문량 파이(Pie) 확대는 곧 협력업체에 대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직결되어 원청기업과 동일한 고용효과 기대



02.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전략 모델

- FTA로 세계를 낚은 1g의 작은 보물
- 강소기업, FTA로 세계를 한꺼번에 사로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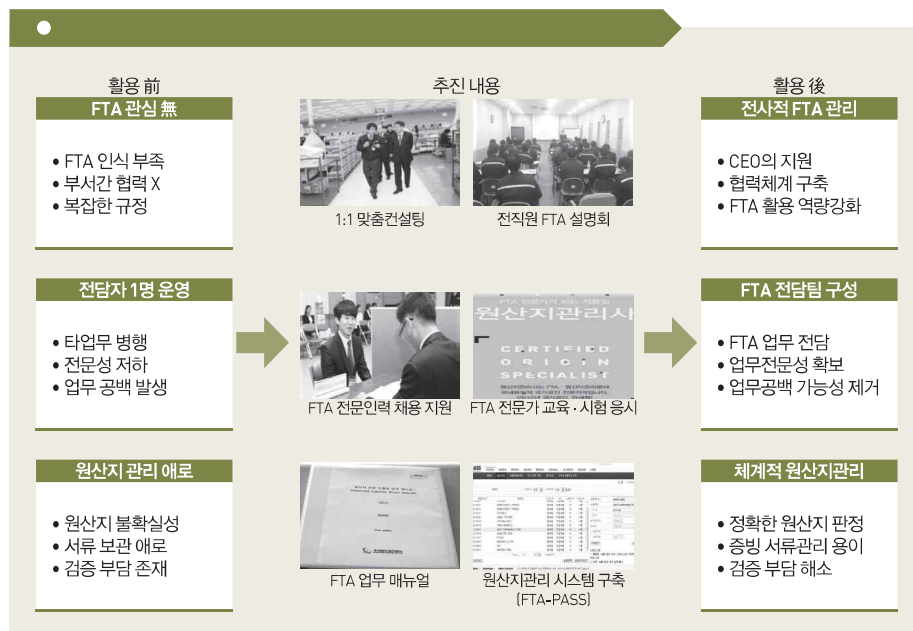
개요

- 강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高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으로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강소(强小)기업이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한국형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강소기업의 FTA 활용능력배양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모델
- FTA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CEO를 비롯한 내부직원의 FTA 인식확산, 원산지관리 전담팀 운영,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이 필수



활용효과

- 강소기업의 세계적인 기술력에 FTA가 더해진다면 고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글로벌 톱 10 기업도 가능

FTA로 세계를 낚은 1g의 작은 보물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S사는 1979년 6월에 설립되어 전 세계 40여 개의 국가에 낚싯바늘(레저용)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고급 낚싯바늘 제조 전문 기업'

-
- 제품소개 : 낚시낚바늘(HS 제9507.20호)
 - 우리나라 낚시바늘 제조업체 수는 총 23개 업체('13년 기준)이며, 종업원 수는 대부분 20인 이하의 영세업체임

② FTA 활용 전 상황

- 내수 침체로 국내 굴지의 낚시용품 생산업체인 a사가 도산하는 등 낚시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S사 역시 15억 원 정도의 부도를 맞고 회생이 불투명

③ 장애요소

- FTA 활용지식의 부족, 협력업체들의 공감대 부족, 생산 공장 분산 및 원산지관리 전담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

④ 극복방안

- 한-아세안 FTA 활용과 세계적 기술력 확보
 - [가격경쟁력 확보] 한-아세안 FTA 활용 시 1.5~15%의 수입국 관세인하 효과가 있어 아세안 시장을 발판으로 수출하기로 결정
 - [고품질의 제품생산]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 결과 발명특허 3건, 실용신안 12건 등 획득으로 일본과 대등한 세계적 수준의 낚시바늘 생산 가능
 - 원산지관리 전담조직 재정비 및 세관 FTA 지원 등
 - [원산지관리 전담팀 구축] 사장님을 중심으로 원산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FTA 전담조직 재정비
 - [FTA 인식 제고] 세관 FTA 전문가를 초빙, 전직원 교육 및 협력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FTA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
-

- [세관의 FTA 지원] FTA 활용 실무에 있어 정확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 사전진단, 인증수출자 인증* 등을 진행하였고, 납시업계를 대표하여 FTA 활용지원 CEO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FTA 활용기반을 마련”

* 한-미, 한-EU, 한-아세안 FTA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 [박람회 참가] 또한,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외 납시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만 개최하던 국제납시박람회를 부산에 최초로 유치하여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참가업체에 FTA 활용정보 제공

⑤ 활용효과

- 뛰어난 기술력과 FTA로 국내 5위 기업에서 세계 5위 기업으로 성장
- 한-EU 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유럽(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및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납시박람회에 참가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 신규바이어 발굴('11년)로 약 89만불 신규계약
- 수출증가와 FTA C/O발급 100%로 회사 고속성장 견인
 - (한-EU FTA) 유럽은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며, 한-EU FTA가 발효('11.7월) 이후 수출 증가하여 전년대비 수출량이 150% 이상 증가
 - (한-미 FTA) 미국의 수출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 '12년에 수출 급증, '12년 말에는 전년대비 수출량이 350% 이상 증가
- FTA 활용률 100%
 - 한-아세안, 한-EU, 한-미 FTA 발효시기 이후 현재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율 100% 달성

- [생산시설 확충] 한-아세안 FTA 발효로 인한 수출량을 맞추기 위해 '06년에 제2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11년에는 한-EU 발효에 대비하여 제3공장을 증설하여 FTA 활용을 위해 2개 공장 증설
 - 3공장까지 증설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한-미 FTA 활용에 대비하기 위해 1공장 옆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구매하여 증설할 계획
- [고용창출] 늘어나는 수출량에 대비하여 '06년에 직원 15명, '11년에는 17명, 도합 32명 생산인력 증원, 낙시바늘 포장 인력 40명 증원(40명→80명)

⑥ 시사점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FTA를 준비

- FTA 시대를 대비하여 내수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한 대표적 사례
 -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 실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수준의 기술력이 담보되어야만 함
- 아울러 전 직원과 협력업체의 FTA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강소기업, FTA로 세계를 한꺼번에 사로 잡다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T사는 PET병, 페인트, 코팅제 등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PIA(석유화학제품)를 수출 업체(세계1위 수출, 20만톤)

-
-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수십년간 축적된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 79개국에 2조1천억 원의 수출 달성

* PX 국내 3위(75만 톤), PTA 세계 7위(200만 톤), PIA 세계 1위(20만 톤), PET 세계 7위(67만 톤)

- 제품소개 : PIA(Purified Isophthalic Acid, 고순도 이소프탈산, HS제2917.39호)
 - PET병·페인트(자동차·선박용 도료)·접착제·코팅제 원료, 전세계에서 미국·일본·스페인·싱가포르·한국 등 7개국 7개사에서만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제품

② 장애요소

- 한-EU FTA 발효 초기에는 사내 직원들의 체계적인 FTA 지식 부족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FTA 활용 효과에 대한 관심 저조
- 유럽경기 불황으로 수출감소,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값싼 중국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날로 치열



③ 극복방안

- FTA 활용을 위한 FIVE-STEP 전략

Step ① FTA 기업체질 개선	서울 세관, 구로세관 FTA 컨설팅 요청
Step ② 한-EU FTA 활용 자격 취득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11.5월)
Step ③ 해외 바이어 설득	C/O발급과 더불어 한-EU FTA 가격인하 효과를 해외 바이어에 설명
Step ④ FTA 교육 이수 의무화	사내 해외영업팀 전체를 FTA 전담팀으로 구성, 부서 전직원 모두 FTA 교육 의무 이수화
Step ⑤ 원재료 수입비용 절감	기초원료 구매처를 중국에서 유럽, 미국으로 변경, 원재료 수입 관세 3% 절감(연 240억 원)

- 해외영업팀·구매 및 생산부서를 한데모아 전담팀으로 구성
 - FTA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의 충족여부를 입증하고자, 원재료부터 원산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생산공정과 BOM 작성, 마지막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모두에게 연관됨을 강조
- 관련부서 부서장부터 신참대리까지 모두 FTA교육이수 의무화
 -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사후 검증은 EU의 경우 연간 3,0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 FTA를 잘 알지 못하는 유럽측 바이어에게 FTA 활용 과정 설명

④ 활용효과

- 한-EU FTA 활용효과(정량적)
 - 한-EU FTA 발효 전 9억 달러에서 발효 후 9억1천7백만 달러로 총 1천7백만 달러(약8.8%) 증가

- FTA 활용효과(정성적 성과)

- 철웅성 중국을 물리치고 EU시장 선점
- 그리스 재정 위기 등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출량 감소와 값싼 중국제품의 가격 공격에 매출확대가 어려워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EU FTA 덕분에 EU시장 진출 확대
-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였던 PET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수출 증가 기대

⑤ 시사점

- 전직원 FTA 교육이수 의무화

- 한-EU, 한-미 FTA를 기업성장의 Key-factor로 인식하고 부서 직원들의 FTA인식 확대와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부서 전직원의 FTA 체계적인 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하여 FTA 활용역량 강화

- 수출만 활용인가 센스있게 원재료 수입에서도 FTA 더블활용

- 원가 절감을 위한 원재료 수입시 적극적으로 FTA 활용 기초원료인 MX(Mixed Xylene)의 구매처를 일본, 대만, 파키스탄에서 미국으로 변경하여 한-미 FTA 활용 원재료 수입시 관세 3% 절감(연240억 원)으로 원가절감에 상당한 성공,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 있어 비교 우위 확보

- 드디어 더블경쟁력 확보!

- 값싼 중국제품과 유럽 시장 선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열세조건을 극복하고 FTA 활용은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어 EU, 미국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
-

03. FTA를 활용한 영세기업 성장 모델

- 영세기업도 한-미 FTA 활용할 수 있다!
- 영세 중소기업 제품, FTA로 북미시장을 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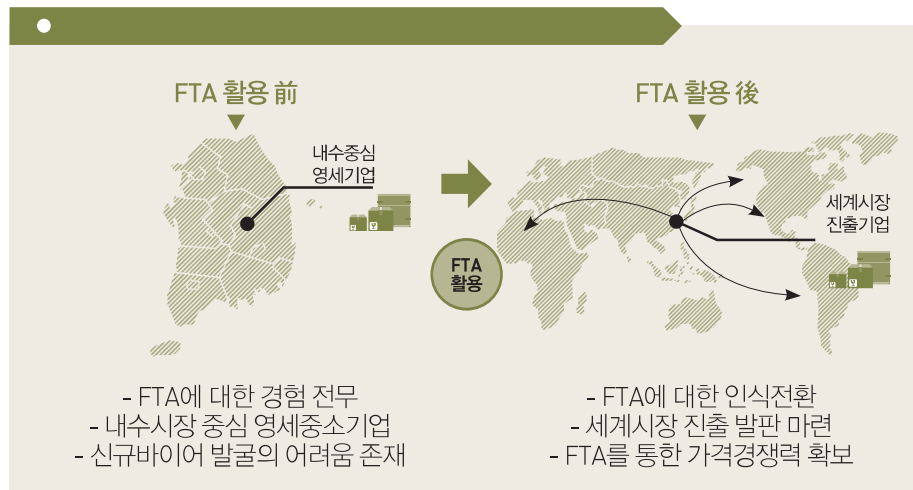


개요

-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대한 경험 및 원산지 전담인력 등이 부족하여 FTA 미활용 사례 발생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영세기업은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정보 부재로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반면, 제조방법, 원재료 등이 비교적 간단하여 작은 노력으로도 원산지판정 가능
- 정부의 영세기업의 FTA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기업의 관심으로, 산업하부 구조에서부터 국가 전체적인 FTA 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



활용효과

- 영세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으로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인 FTA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다른 상위 기업들의 FTA 활용도 용이해짐

영세기업도 한-미 FTA 활용할 수 있다!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U사는 종업원 10여 명으로 비닐봉투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영세중소기업

(단위: 건, 천불)

설립일자	업종	종업원수	수출건수	수출금액
1989.4월	제조	10	57	2,138

- 제품소개: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제3923.21호)

-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는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틱 등의 용기

② FTA 활용 전 상황

- 동사는 미국으로 비닐봉투를 수출은 하고 있었으나, 한-미 FTA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여 한-미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세관에 FTA 컨설팅 요청

③ 극복방안

- 세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FTA 활용
 - 주요 수출물품(HS 3923.21)에 대한 원재료 소요내역 및 가공공정을 확인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안내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 8가지 항목 안내 및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제공
 - 미국 원산지 검증 대비 서류보관의무 사항 안내 및 원산지 서명카드, 원산지 작성대장 비치 안내

④ 활용효과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의 전체가 미국으로만 수출되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연도별 0.3%씩 향후 10년 균등인하로 연간 6백 ~ 7백만 원의 관세혜택
-

(단위: 천불)

HS 품명	기본	협정	혜택금액
3923-21.0000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	3%	2.7%*	6.4

* 2012[2.7%] → 2013[2.4%] [매년 0.3%씩 2021년까지 단계적 철폐] 2021[0%]

- 한-미 FTA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미 FTA를 통한 관세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세관의 1:1 FTA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한-미 FTA를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시 협상카드로 제시
- 대미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정도 증가하였으며, 계속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인력과 설비를 늘려나갈 계획

⑤ 시사점

- FTA에 대해 전혀 모르던 영세기업도 FTA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영세 중소기업 제품, FTA로 북미시장을 날다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V사는 반도체 기술을 축적하여 한국신기술(NT) 인증, 신기술인정서(KT)를 획득한 업체로서 초정밀 가스감지기를 북미시장으로 수출
- 제품소개 : 초정밀 가스감지기(제9027.10호)
 - 가연성 가스 또는 코크스로 가스발생로, 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

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 특히,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산소, 수소, 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됨

② 장애요소

기술자에게는 FTA가 너무나도 먼 길!

- V사는 CEO를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3명, 자재관리 1명, 경리직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FTA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 부재
- FTA 활용하고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FTA 교육을 참석하였지만, 원산지소명서, BOM 등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FTA C/O발급에 포기

③ 극복방안

-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집중 컨설팅
 - 관할세관은 V사가 작성한 BOM을 1차 분석 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사후 검증 대비 등 종합적인 현장 컨설팅 실시
 - 또한, 한-미 FTA C/O, 원산지확인서, 소명서, BOM, 공정도 등 관련 서류작성 추가 지원
- FTA 인식 전환이 FTA 혜택으로 직결
 - V사는 FTA 혜택이 수출자에게 직접 돌아오기 보다는 수입자에게만 수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어 FTA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관할세관은 V사의 CEO, 직원과 3차례의 상담을 통해 한-미 FTA의 간접적인 관세 특혜 수혜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줌

④ 활용 효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 미국 바이어는 '11년에 단발적으로 500~700개의 소량으로 구매해오던 가스검 색기를 '12.3월 한-미 FTA 발효 후 관세 1.5% 감소, 현지 화물핸들링비용 1.2% 절 약 등 가격인하로 35,000개 계약
- V사는 미국을 거점으로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미 FTA 활용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하반기에는 한-칠레 FTA를 활용하여 남미시장의 교두보 확보에 주력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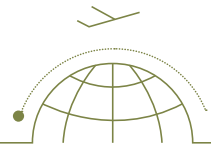
⑤ 시사점

- 인원이 소수인 영세기업체는 FTA 담당자 및 전문지식 보유자의 부재로 FTA 활용 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그러나 세관 및 국내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및 영세기업 대상으로 하 는 집중 컨설팅에 참여함으로써 FTA 활용 기회 획득



04.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기업 협력형 모델

- 협력사와 상생(相生) FTA로 글로벌 동반성장 이끈다
- 생산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FTA 활용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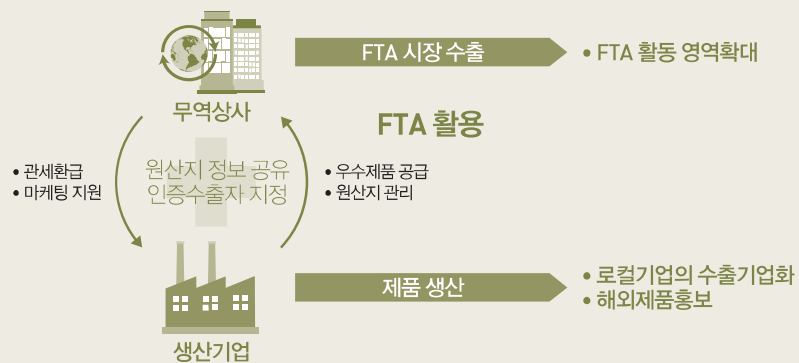
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생산능력은 있으나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비한 생산기업과 FTA 활용능력 및 수출시장 확대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무역상사가 다수 존재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생산기업(완제품 생산자)과 무역상사(수출업체)간의 기업별 특화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관세환급 지원, 원산지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

●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업체 협력 모델



활용효과

- 무역특화기업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FTA 특혜세율로 저가에 수출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향상
- 생산특화기업은 무임으로 해외에 자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으며, FTA 활용능력 배양으로 수출기업화 가능

협력사와 상생(相生) FTA로 글로벌 동반성장 이끈다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W사는 클리닝 유닛 등 소모성 자재를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EU, 아세안 등 협정 체결국으로 원상태 수출

- 제품소개

- 클리닝 유닛(CLEANING UNIT, HS 제8424.89호) : 분사 · 살포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 · 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는 기기
- 다이버터 컨베이어(DIVERter COVEYOR, HS 제8428.33호) : 물품을 이동시키면서 여러 레인(Lane)으로 구분되도록 분류해주는 시스템

② FTA 활용 전 상황

- W사는 제조하지 않고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만 하기 때문에, 원산지판정을 위한 BOM, 제조원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기 어려움

③ 장애요소

- 산업자재 유통서비스(구매대행사)의 업무특성
 - 실질적으로 제조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국내제조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BOM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 원산지 판정시 제조사로부터 BOM을 획득하기가 어려움(단가 등 공개 꺼림)
 - 협력사의 기업정보 접근성 제약
 - 실질적으로 원산지의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는 제조원가, 중간재 등의 산정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기본사항들을 정확히 알아야하는 바, 이에 대한 협조를 얻기 어려움
 - 다수의 협력사 관리
 - 대다수 업체가 영세하고, 제조사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수많은 제조사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어려움 존재
-

④ 극복방안

- 마중물* 프로젝트

- 협력사와 함께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중소기업 FTA 체결국가의 수출의 물꼬를 열어주는 역할 수행

* 마중물 활용 : 펌프에서 고인물(협력사인 중소기업의 FTA 미활용)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마중물)로써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협력사와 함께 FTA 활용을 높이도록 지원

- 품목분류 확인

- 수출하는 물품이 신규 아이템인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 기존 아이템은 관세사의 DB 공유, 관세사 자문 활용

-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 수출품목에 대한 기본 교육, 고객사 ERP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동

- 전사적 원산지 관리

- 프로그램을 웹으로 구현함에 따라 다수의 영세업체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산지 포괄확인서 제출가능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지정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2011.10.20)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2012.02.08)

⑤ 활용효과

-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관세환급기회 제공

- W사를 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경쟁력을 얻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또 하나의 혜택은 바로 관세환급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로 지정되어있고, 환급 또한 수출자로 지정하여 실제로 물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을 구매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W사의 '중소기업 상생'실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기회를 제공

- 마케팅기회 제공

-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기존의 W사의 Global Infra를 이용한 중소기업 제품의 꾸준한 홍보(FTA 발효국의 경우 가격경쟁력 홍보) 및 각종 해외 전시회 참가로 인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며, W사가 보증함으로써 초기 시장 개척을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의 절감혜택을 향유

- 영업판로 확장을 통한 수출증대

- 기존의 W사의 구매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Global 고객의 needs를 파악, 수출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며, 획기적인 중소기업 신제품을 연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해외 구매자를 개척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

⑥ 시사점

-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협력업체들과의 상생경영을 위해 노력해온 △△社は FTA를 통하여 협력 중소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진출·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수출지원
- [협력사 '성장발판' 마련] 협력사의 품질확보 및 FTA 원산지관리 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동반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社를 통하여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FTA 발효국 바이어와의 가격협상력 제고로 간접 '성장발판'마련(매출확대 📈)

생산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FTA 활용 극대화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X사는 수용도료(페인트)용 첨가제인 폴리아크릴아미드를 수출
- 제품소개 : 폴리아크릴아미드(HS 제3906.90호)
 - 유기산과 아민이 반응하여 생기는 아미드 결합을 가지는 중합체. 일반적으로 강도, 염색성이 우수하여 대부분 섬유로 사용되며, 내마모성이 뛰어나서 기계 부품으로도 사용됨

② 활용과정

■ FTA 활용 어려움과 극복과정

① FTA 활용상의 어려움

-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하나, 세 번분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화학원재료에 대한 세번분류가 곤란
- 최종수출업체로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 원재료 내역에 대한 HS분류 등은 직접적인 물품의 관리가 아닌 서류(원산지확인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여 공급업체도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 가능

② FTA 활용을 위한 경영방법 변화

- 최종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FTA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 공유
- 두 업체 모두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함으로써,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원산지 증명서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FTA 활용혜택 극대화

③ 활용 효과

- FTA 활용에 따른 (예상)경제효과: 연간 1.6억 관세절감효과 발생

수출국	연간 수출액(\$)	관세율		관세 절감액 (천원)
		현행	FTA	
미국	1,040,000	6.5%	0%	75,712
유럽	838,000	6.5%	0%	61,006
칠레	353,000	6%	0%	23,722
아세안	190,000	6.5%	5%	2,128
계	2,421,000			162,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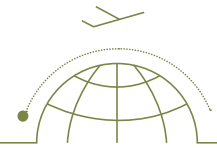
- 수출실적
 - FTA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 추세로서 미국은 약 7억3천만 달러, EU로는 1억5천만 달러의 수출증가를 기록함
- 한-EU FTA 활용을 위하여 인증받은 품목 이외 추가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한 FTA 활용 효과 향유
- 자율증명방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통하여 FTA 활용이익을 극대화하고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의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

④ 시사점

- FTA 활용의 극대화 및 정착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완제품 공급자, 원재료 공급자 등 모든 연관 기업에서 FTA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

05. 체약상대국 FTA를 활용한 생산·물류거점 설립 모델

- 해외 생산시설 설립으로 FTA 2배 활용!



개요

- FTA 체결흐름으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s)은 총 585개 체결되었고 그 중 379개 발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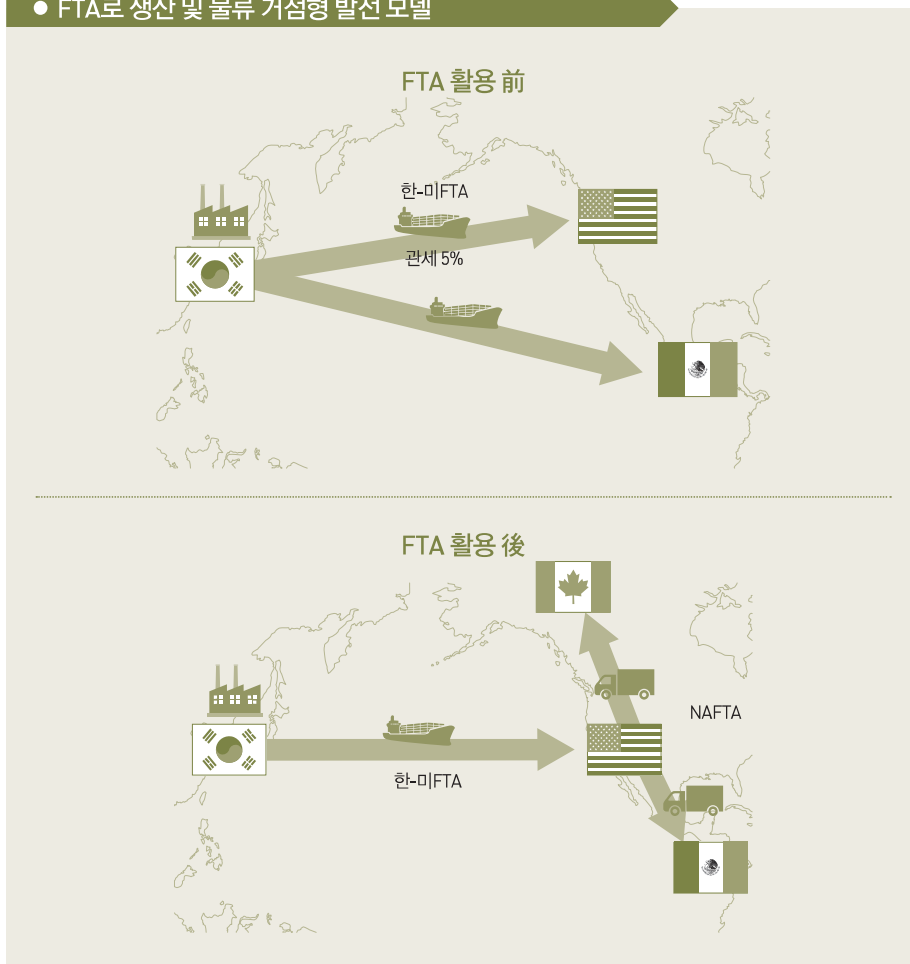
※ 2014년 6월 15일 현재 WTO에 접수된 건수 기준

- 수많은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뿐만 아니라, 체약상대국이 체결한 FTA까지 활용하여 2중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제3국간의 FTA도 활용할 수 있음
- 원료 및 반제품을 체약상대국에 수출하고, 체약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제3국으로 무관세 수출

● FTA로 생산 및 물류 거점형 발전 모델



활용효과

- 우리나라-체약상대국 FTA와 체약상대국-제3국 FTA의 연속 활용을 통한 2중 관세절감 효과

해외 생산시설 설립으로 FTA 2배 활용!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Y사는 미국 자동차부품회사 E사의 아시아 지역 납품을 총괄하고, 국내 생산기지 역할 수행 및 물류관리를 대행하는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로 매년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제품소개 : 자동차부품(HS 제8708.99호)



② FTA 활용 전 상황

- 생산제품의 90% 이상을 주문하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 쇄도
- 對미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자체 원산지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FTA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

③ 장애요소

- FTA의 활용으로 바이어의 주문이 증가하여 매년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유 값 상승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년 물류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이익의 증가폭이 크지 않음

④ 극복방안

- 對미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1,500평 규모의 생산기지 확충을 계획
- 원부자재를 FTA를 활용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미국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NAFTA 등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예정

⑤ 활용효과

- (수출 증가) 한-미 FTA 발효 전 철저한 사전 준비에 의한 FTA 활용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액이 100% 증가
- (물류 거점) Y사는 생산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보하여 현지의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및 생산량을 증가시켜 미주 지역 납품 총괄책임이자 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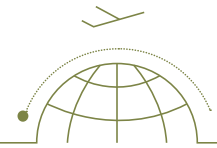
⑥ 시사점

- 對미 수출량 증가 및 캐나다, 멕시코의 신규 수요에 대비하고 NAFTA 등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를 연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장이전을 통한 생산설비 확대를 결정



06. 누적기준 활용 모델

- FTA, 수출전선에 무지개를 띄우다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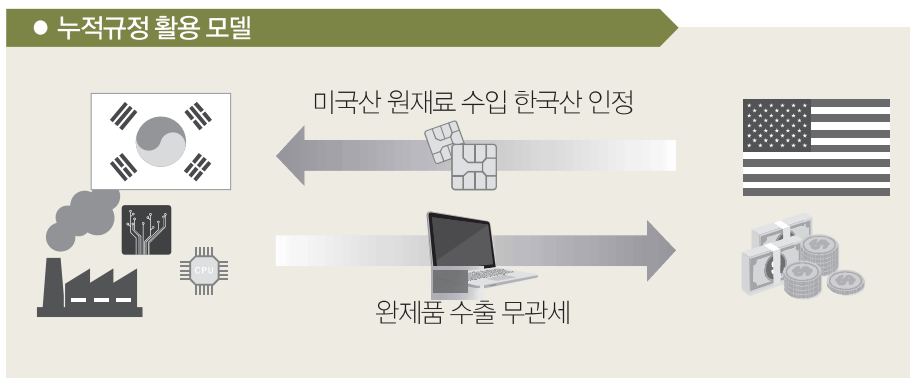
- 수출자가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수입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 받아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

*누적기준 :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재료누적)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판정 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며 모든 FTA 협정에서 인정

- (공정누적)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페루 FTA에서는 인정되나 한-인도, 한-아세안, 한-EU, 한-EFTA FTA에서는 불인정



※ [유의사항]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하며, 협정에 공정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에서 누적을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정누적 인정 가능

〈누적기준 적용 유형〉

구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인도	아세안	EFTA / EU / 터키
㉔ 재료누적	○	○	○	○	○	○	○
㉕ 공정누적	○	○	○	○	×	×	×
근거규정	제4.5조	제4.9조	제6.6조	제6.5조	제3.7조	제7조	3조

활용효과

-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고,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체약국간 교역촉진)

FTA, 수출전선에 무지개를 띄우다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E사는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코팅 도료(Paint) 전문제조업체로 국내 자동차 회사에 내수판매와 미국, EU, 인도, 중국 등 해외로 수출

※ 2009년도 500만 불 수출의 탑, 2010년도 1,0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 수출물품(Paint, HS 3208)은 자동차 내·외부의 범퍼, 핸들, 휠커버, 라디에이터 그릴, 쉐루프, 센터 콘솔, 글로브 박스, 오디오판넬, 에어백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코팅재로서 첨단 기술 적용 제품

② FTA 활용 전 상황

- 동사는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FTA 협상 및 발효국인 인도, 체코, 중국, 미국 등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화 전략 추진
- 2011년 FTA 체결국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55%(850만 불)를 차지하여 FTA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 FTA 협정별 현황

[단위: USD]

수출물품	적용협정	기본세율(%)	협정세율(%)
3208.10	한-미	3.7	0
	한-EU	6.5	0
	한-인도	12.5	7.8
3208.20	한-미	3.6	0
	한-EU	6.5	0

수출물품	적용협정	기본세율(%)	협정세율(%)
3208.20	한-인도	12.5	7.8
3208.90	한-미	3.2	0
	한-EU	6.5	0
	한-인도	12.5	5

- 한-미, 한-EU는 관세 즉시철폐 품목으로 3.2%~6.5% 관세 혜택
 - 2012.3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한-EU, 한-인도 CEPA 등 활용

③ 장애요소

- 한-미 FTA 활용 장애요인
 -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미제출 ⇒ 원산지결정기준(CC) 미충족
 - 인적 물적 비용 발생 ⇨ 소요 원재료 전체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미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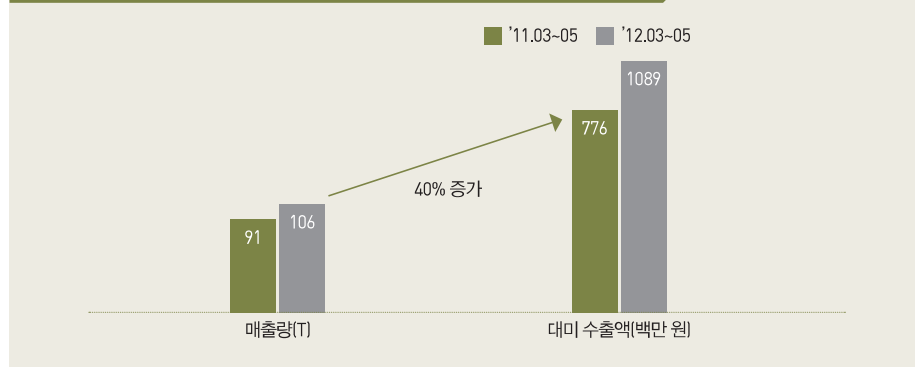
④ 극복방안

- 한-미 FTA 활용 극복과정 : FTA 활용 Total Consulting 실시
 -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재료관리 단순화(인력 / 비용 절감)
 - 미국산 원재료를 수입하는 국내 협력업체를 설득하여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여 누적기준을 적용(세번변경기준 충족)
- 한-미 FTA 협정의 도료(Paint)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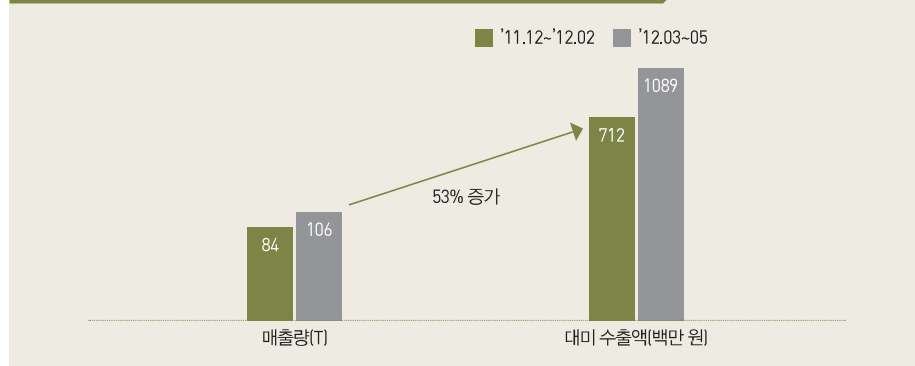
HS	품목	원산지결정기준
3208.10	Based on polyester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C)
3208.20	Based on acrylic or vinyl polymer	
3208.90	other	

⑤ 활용효과

● 전년동기 대비



● 발효 전 3개월 대비



- 수출증가에 따른 2012년도 연간 관세혜택 예상액은 약 6.6억원으로 추정

⑥ 시사점

- 적극적인 노력하여 협력업체와 유대관계로 외국산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변경하여 FTA 활용 수혜 사례

07. 특정공정 수행기준 모델

- 화학기업 3가지의 약점을 버리고 1가지의 장점으로
- 협력업체를 통한 손쉬운 FTA 활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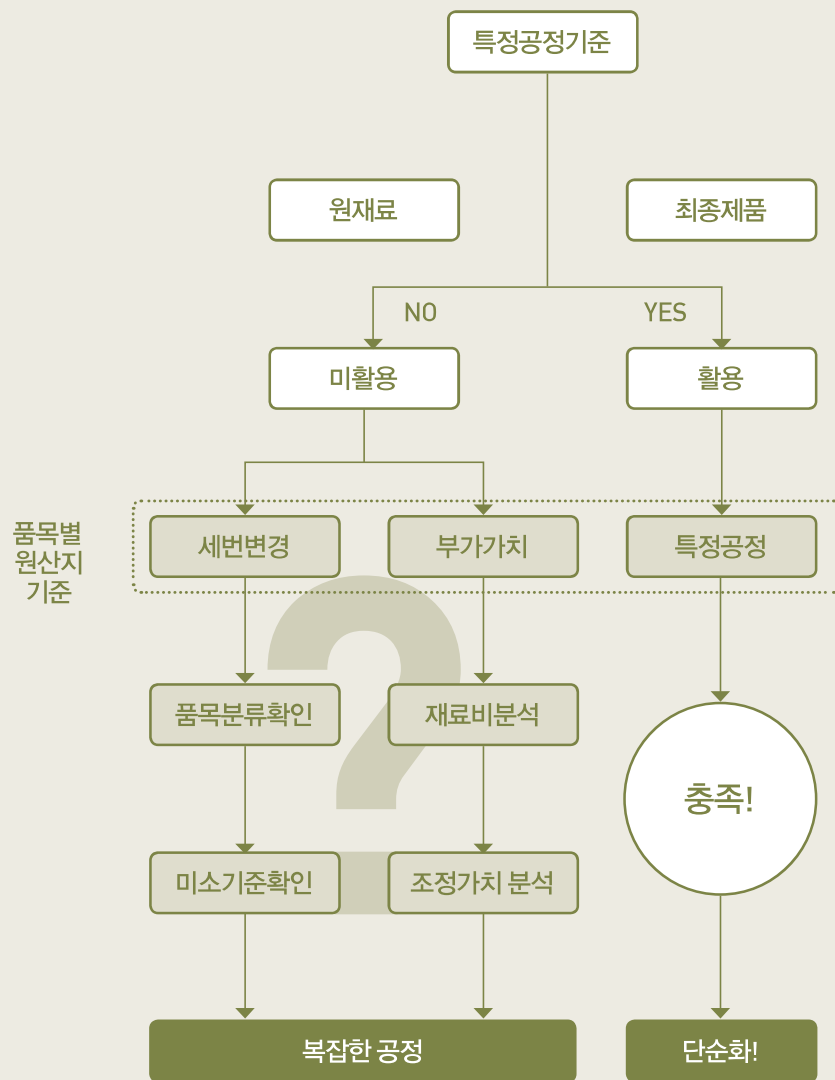
-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개별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류 또는 호의 주 형식으로 특정가공공정을 규정

* 특정공정기준은 제품의 제조과정 중 각 제품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가공작업을 열거하여 지정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원재료의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발생수준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고 특정공정만 입증하면 되므로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모델
 - 해당 공정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춘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 특정 공정 수행 기준 모델



※ [유의사항]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의 특정공정기준 적용가능 여부를 확인 후 수행 공정이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 되는지 엄밀한 확인 필요

활용효과

- FTA 활용 수출업체의 사후 원산지검증 등 원산지 관리 비용 감소와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가능성 증가
- 원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원산지가 인정되므로 단가가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가능

화학기업 3가지의 약점을 버리고 1가지의 장점으로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F사는 글리신과 자일리톨 등 식품 및 의약품용 소재, 중합방지제 및 기타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② FTA 활용 전 상황

- FTA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달리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매출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대응 미흡
- FTA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시 오히려 기존 국내 거래처 및 바이어에 대한 거래 중단 우려

③ 장애요소

- FTA 활용 시 장애요인(세가지 약점 : 3W(Weakness))

1W	2W	3W
전문인력 부족	세번분류와 원가관리의 어려움	원산지 판정·관리 능력 부재
중소기업으로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부재	HS품목분류 전문지식 부족, 원재료 가격관리 어려움	협정 규정 이해도 낮음, 지속적인 관리능력 부족

④ 극복방안

- 다양한 협정기준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많은 본부세관 컨설팅팀에서 화학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상세기준 정밀분석
- 화학제품의 경우 한미-FTA 협정이 타 FTA 협정과 다른 결정기준이 있음에 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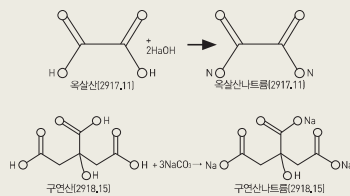
〈화학제품류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물품 및 HS	미국	칠레	싱가포르	EFTA/EU
석유 및 화학제품 (27류~38류)	CTH Or 규칙	CTH Or RVC(45/30)	CTH	CTH or MC50

- 한-미 FTA 협정의 화학제품 원산지 규칙 세부내용
 -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는 규칙1의 내용을 설명, 화학물 질의 혼합·여과 공정 등 수행시 분자구조식이 변경되어 원산지 충족됨을 확인

● 화학제품 가공공정기준 적용 예시(제6부 주)

① 화학반응 : 반응 전 재료의 세번과 반응 후 상품의 세번이 동일하나 원산지 인정



② 정제과정 : 정제 전 재료의 세번과 정제 후 상품의 세번이 동일하나 원산지 인정



⑤ 활용효과

-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에 신뢰감 생성으로 공급처와 수출자 모두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감 해소
- 국내 공급업체에 원산지(포괄)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손실 위기 해소와 동시에 연계산업의 FTA 활용 지원

⑥ 시사점

- 화학제품류(28~39류)의 한-미 FTA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에 대한 확대 가능
- 화학반응에 따른 분류는 기업에서 더 전문성이 있어 결정기준을 이해하기 쉬우며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

협력업체를 통한 손쉬운 FTA 활용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G사는 섬유제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Polyester Staple Fiber를 구입하여 아프리카,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도매업체임
-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매업만을 영위

② FTA 활용 전 상황

- 폴리에스터 화이버의 경우 국내 섬유산업 환경상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함에도 원산지 관리능력 및 시스템 부재로 활용 저조

* SP: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 FTA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원산지확인서 등 증명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이 어려움

③ 극복방안

- 한-EU FTA 활용을 위해 발효 이후 세관 설명회 참석
- 인증수출자 제도 이해 및 FTA 활용방법 제고를 통해 두려움 해소
- 완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의 협조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11.8.1)
 - 컨설팅으로 완제품 생산업체 원산지결정기준(SP) 충족 확인 및 원산지확인서 등 필요서류 구비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

- 한-EU FTA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 발효 즉시 활용
 - 한-EU FTA 원산지기준 충족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도 충족
 - EU 인증담당자와 바로 연락하여 한-미 FTA 발효 즉시 원산지증명서 발행방법 등 상담을 받고 즉시 활용

품명	HS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율 → 협정세율
Polyester Staple Fiber	5503.20	한-EU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4% → 0%
		한-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201부터 5203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 및 5403.42부터 5405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4.3% → 0%

⇨ 화학재료(Polyester Resin)로부터 제품이 생산되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④ 활용 효과

- 한-미 FTA 발효 100일간 전년 동기 대비 대미 수출액 100% 증가
 - 미국 수출물량이 증가추세로 단일의 수입자와 거래를 해왔으나, 한-미 FTA 발효 후 새로운 바이어 확보를 통한 향후 대미 수출확대 예상

- 한-EU FTA 발효 후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하여 원산지 인증품목을 수출함으로써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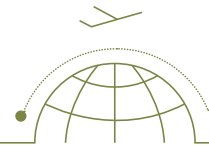
⑤ 시사점

- 수출자, 완제품 공급자 등의 연관기업간에 FTA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류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FTA 활용효과를 극대화 필요

구분	상세내역
업종(품목)	인조섬유,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HS5503.20)
적용협정	한-EU FTA
추천업체	섬유제품 수출업체

08. 완전생산기준 입증을 통한 FTA 수출 모델

- 역내산이 된 진도 맛김



개요

-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농수축산물 등 1차 생산제품이 많으며, 대부분 생산자가 농어민으로 원산지확인서 구비에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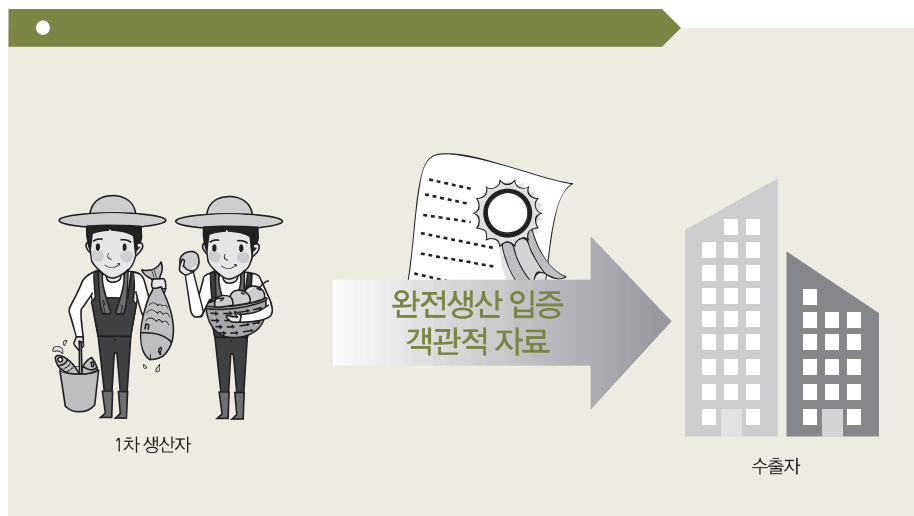
* (예시) 수산물인 경우 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초생산자(선주)가 바다에 있어 원산지확인서 징구가 어렵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또한 공산품과는 달리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서류가 없고, 서류 확보 또한 어려움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원산지 입증
 - 일반적으로 거래단계에서 발행* 되고 있거나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으로 완전생산 및 획득사실 입증(해당서류로 원산지확인서 대체)
 - * 농산물 출하확인서, 조합원확인서류, 수산물수매확인서, 어촌계장확인서 등
 - ** 농지원부, 경작증명서,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원양어획반입신고서 등



활용효과

- 원산지확인서 대체가능 서류로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 입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1차 생산품의 FTA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

역내산이 된 진도 맛김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H사는 2000년에 설립된 종업원 30여명의 소규모 업체로 조미김, 김밥김 등 해조류를 가공하여 수출하며 수출 실적이 2012년 인증수출자 인증 후 매년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수출실적〉

[단위: 천불]

HS(품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12.21-1010 (건조김)	5	27	14	945	15	806	7	764
2106.90-4010 (조미김)	11	98	17	297	35	689	32	699

② FTA 활용 전 상황

- 2010년, 2011년 총수출은 각각 142천 불(11건), 125천 불(16건)으로 주로 내수에 치중, 주로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직접 수출실적은 미비
- 2012년 해외로 판매시장을 확장함에 따라 필요에 의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득함
- 동사는 국내 김 생산자로부터 물김을 공급받아 자회사인 ○○○푸드에서 건조김을 가공한 후 건조김을 공급받아 수출하거나 조미한 후 수출



③ 장애 요소

- 마른 김은 각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규정한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입증할 근거자료 확보 어려움
 - 공장에서 제조되는 물품은 원재료 공급 시 생산자가 발급하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나 어업인 발급 원산지(포괄)확인서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
 - 1차 산물인 '김'의 경우 물김의 국내 생산자로부터 국내 재배, 수확, 채취를 입증할 근거서류가 무엇인지와 근거서류의 확보가 어려움

〈조미김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체결국	결정기준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의 것, 제1212.20호의 것,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아세안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건조김은 완전생산품이어야 하고 아세안, 페루 FTA에서 조미김의 재료로 사용되는 '김'은 완전생산품이어야 함.

- 체결국별 품목분류 상이로 품목분류에 어려움
 - '김'은 제조 공정에 따라 건조김(HS 1212.20 2007 기준), 구운김(HS 2008.99), 조미김(HS 2106.90)에 각각 분류되나 EU에서는 조미김이 HS 2008.99호에 분류

④ 극복 방법

- 1차 산물의 국내 생산 근거자료 확보
 - 우리나라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업권이 있는 어업인(어촌계)은 당해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협에서 위탁판매를 실시한다는 수산업계 현황을 파악
 - 면허가 있는 어업인(어촌계)과 수협의 어업권행사계약서 및 물김의 위탁판매 출하확인서(수협), 수협의 물김 송품장 등을 근거서류로 확보

⑤ 활용 효과

- 2012년 이후 매년 건조김 및 조미김에 대한 수출 증가
 - 수출자에 대한 공급을 포함하여 2013년 수출 전년대비 20% 증가
 - 2013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2%, 6% 증가
- 국내생산 완전생산품의 업계 현황을 분석, 각 협정의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지원

⑥ 시사점

- 1차 산업 생산품의 원산지 증빙 방법 체계화로 우리 농어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농어업이 FTA 최대 피해산업에서 FTA 활용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FTA 시대 농어촌 활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